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. 4. 12 선고 2023가단44831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소송대리인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4. 5.

판 결 선 고 2024. 4. 12.

주 문

1. 피고는 주 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5,792,05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. 3. 18.부터 2024. 3. 6.까지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강효인

별지